

서울특별시 디지털 웰니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춘곤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3307
----------	------

발의 년 월 일: 2025년 10월 20일
발의자: 김춘곤, 김규남, 김용호,
김재진, 김혜영, 남궁역,
박춘선, 이성배, 이영실,
임만균, 최기찬, 한신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는 AI, 빅데이터, 사물인터넷(IoT)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하여 시민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, 삶의 질을 높이는 디지털 웰니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.
-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는 디지털 웰니스 관련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·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.
- 이에 따라 시장의 책무와 지원 근거, 관련 사업 범위 및 민관협력체계,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디지털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,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“디지털 웰니스”를 ICT 기반의 건강·복지·생활산업 전반으로 정의(안 제2조)
- 나. 시장은 디지털 웰니스 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 행정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(안 제3조)
- 다. 디지털 웰니스 산업과 연계된 관광상품 및 콘텐츠의 발굴·육성, 홍보·마케팅 지원 근거 마련(안 제6조)
- 라.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(안 제7조)

마. 기업 · 학계 ·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정기 협의회
운영 근거 명시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정보통신기술진흥법」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디지털 웰니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디지털 웰니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디지털 웰니스 산업을 진흥하고,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디지털 웰니스”란 AI, 빅데이터, 사물인터넷 등 정 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하여 시민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을 도모하고, 관련 제품·서비스·콘텐츠 산업을 포함한 경제·사회적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디지털 웰니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, 이에 대한 행정적·재정 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디지털 웰니스 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디지털 웰니스 산업의 추진 및 지원) ① 시장은 디지털 웰니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디지털 웰니스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·콘텐츠 개발

2. 디지털 웰니스 인프라 구축 및 개선
3. 디지털 웰니스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
4. 디지털 웰니스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
5. 디지털 웰니스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
6. 디지털 웰니스 산업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
7. 디지털 웰니스 컨설팅·실태조사 및 연구사업
8.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웰니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디지털 웰니스 연계형 관광산업 지원) 시장은 디지털 웰니스 산업과 연계된 관광상품·콘텐츠를 발굴·육성하고, 관련 기업 또는 단체에 홍보·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디지털 웰니스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) ① 시장은 디지털 웰니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디지털 웰니스 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디지털 웰니스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

2. 제6조에 따른 디지털 웰니스 연계형 관광산업 지원 및 운영·평가
 3. 디지털 웰니스 산업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
 4. 그 밖에 디지털 웰니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디지털 산업 또는 정보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1.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
 2. 디지털 웰니스 관련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회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디지털 웰니스 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.
-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,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- ⑧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.

제9조(사업의 위탁) 시장은 디지털 웰니스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,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, 위탁사무의 관리·평가 및 결과 공개에 관하여는 같은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디지털 웰니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

업·학계·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정기적인 협의회 또는 네트워크 운영 등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디지털 웰니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디지털 웰니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연번	조·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1	제5조 (디지털 웰니스 산업의 추진 및 지원)	제1항	◦ · 디지털 웰니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(박람회 개최, 실태 조사 실시) 비용이 발생함 ⇒ 약 535,000천원 소요예상(연평균 107,000천원)
2		제2항	△ · 디지털 웰니스 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구체적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현재로서는 객관적인 추정이 곤란함
3	제7조 (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)	◦	· 디지털 웰니스 자문위원회 ¹⁾ 설치·구성·운영을 위한 회의 개최비, 참석수당 등 비용이 발생함 ⇒ 약 30,275천원 소요예상(연평균 6,055천원)
4	제8조(위원회 운영)	◦	
5	제9조(사업의 위탁)	△	· 디지털 웰니스 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구체적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현재로서는 객관적인 추정이 곤란함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디지털 웰니스 박람회 개최 (제5조제1항제5호)
 - 디지털 웰니스 산업 실태조사 실시 (제5조제1항제7호)
- * 안 제5조제1항제1호는 관련 사업들이 기시행 중²⁾에 있으며, 동항 제2호, 제3호, 제4호, 제6호 및 안 제6조는 조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박람회 개최 및 실태조사 추진을 통해서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 추계하지 않음
- 디지털 웰니스 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 (안 제7조, 제8조)

나. 전제

- 박람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되, 실태조사는 5개년 단위로 실시하여 추계기간 첫 해에 한 해 추진하는 것으로 함
- 자문위원회 회의 운영시 기본 회의 개최만을 고려함(출장, 세미나 등 없는 것으로 전제)
- 물가상승률 및 환율 변동은 미반영

다. 추계기간 : 시행일로부터 5년(2026년~2030년)

- 1) 자문위원회는 최대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민간위원을 포함한 합의제 기구로서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 제2조(정의)에 따라 위원회로 의제되어 위원회 관련수당 및 비용지급 기준 적용
- 2) 서울시는 '손목닥터9988'과 같은 헬스케어 앱과 디지털 기기를 연동해 시민을 건강행태를 개선하고, 시립인터넷 중독예방상담센터를 통해 '뚜벅뚜벅 디지털 디톡스 캠페인'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 정신적 웰빙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음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비용 ≈ 약 565,275천원(연평균 113,055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디지털 웰니스 박람회 개최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100,000	500,000
디지털 웰니스 실태조사 실시	35,000	-	-	-	-	-	35,000
디지털 웰니스 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	6,055	6,055	6,055	6,055	6,055	6,055	30,275
소계(a)	141,055	106,055	106,055	106,055	106,055	106,055	565,275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

재정분석과장 이선희

추계세제팀장 김중현

추계분석관 이설화

☎ 02-2180-7952

e-mail : sseo1789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 상세내역

- 디지털 웰니스 박람회 개최 : 연 100,000천원 소요 예상

- (박람회 개최³⁾) 홍보 부스 제작 + 홍보물 제작 + 행사운영 및 이벤트
= 16,900천원 + 21,450천원 + 61,650천원
= 100,000천원

- 디지털 웰니스 산업 실태조사 실시 : 총 35,000천원 소요 예상

- (실태조사⁴⁾) 연구원 인건비 + 디자인비, 인쇄비, 회의비 등 경비
= 20,000천원 + 15,000천원

- 디지털 웰니스 자문위원회 설치·운영 : 연 6,055천원 소요 예상

- (위원구성) 위원수는 10명으로 가정⁵⁾
(시의원 2인 + 2·3급 간부 2인 + 민간위원 6명)

3) 타부서 유사사례(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)를 바탕으로 비용을 산출하였음 ※상세내역 불임

4) 타부서 유사사례(디자인정책관 디자인산업담당관)를 바탕으로 비용을 산출하였음 ※상세내역 불임

5) 서울특별시의회 의원(2명) + 디지털도시국장(2급 공무원) + 창조산업기획관(3급 공무원) + 디지털 웰니스 관련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(6명)

- (위원임기) 통상적 서울시 위원회 임기를 준용하여 위원 임기는 2년 가정
 - (회의주기) 분기별 1회씩 연 4회⁶⁾ 실시 가정
 - (소요금액) 참석수당 1인 200천원⁷⁾, 업무추진경비 1인 30천원⁸⁾, 위촉장 제작비 1인 5,500원⁹⁾전체
- ① 참석수당 비용 = 4,800천원
 = 수당단가 × 지급인원¹⁰⁾ × 연4회
 = 200천원 × 6명 × 4회
- ② 업무추진 경비 = 1,200천원
 = 경비단가 × 지급인원 × 연4회
 = 30천원 × 10명 × 4회
- ③ 위촉장제작비 ≈ 55천원
 = 제작비용 × 인원
 = 5,500원 × 10명

-
- 6)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4조(위원회의 운영)제2항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가정
 7)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(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) 1. 위원회 참석수당

구분	단위	단가	비고
위원회	일당	기본료 : 150,000원 초과 : 50,000원	- 원격회의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-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-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 지급불가

- 8)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(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 등의 기액 범위) 및 [별표1]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기액 범위(제17조제1항 관련)에 따라 30천원 수준으로 적용
 ⇒ 최근 50천원으로 변경(2024. 8. 27.개정) 되었으나 통상적인 업무추진 예산을 고려하여 30천원으로 적용
- 9) 통상적인 서울시 위촉장 제작비용 준용 / 위촉위원 임기에 따라 2년마다 발생 가정(전원지급 전제)
- 10)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 제4조(수당)제2항에 따라 공무원(당연직 등)을 제외한 민간위원 13명에게 지급

(붙임) 물산업 일자리 박람회 및 서울 디자인산업 실태조사 예산서(비용산출 참조자료)

물산업 일자리 박람회

1 기 본 현 황

사업개요

회 계	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		
사업기간	<input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,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사업기간 2025.01 ~ 2025.12		
사업내용	<input type="radio"/> 물재생분야 관련 업체와 협업으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물산업 분야 구직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상담 및 정보 제공으로 취업기회 확대		
사업비 (당해년도)	100,000천원 <small>기타 (예산 외) [구비]</small>	[국비] <small>(시비) 100,000천원</small>	[기타]

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물순환안전국	물재생시설과	어용선 2133-3820	이원준 2133-3842	최은선 2133-3850

*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

2 예 산 설 명

예산 총괄

(단위 천원, %)

구 분	2024예산액 (A)	2025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-) 100,000	(x-) 100,000	(x-) 0	(x-) 0
행사운영비	(x-) 100,000	(x-) 100,000	(x-) 0	(x-) 0

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5년 예산내역	
행사운영비	<input type="radio"/> 상담 및 컨설팅 부스 제작	= 16,900천원

과목구분	2025년 예산내역	
	26개*650,000원	
○ 홍보물제작 등	=	21,450천원
21,450,000원		
○ 행사운영 및 이벤트 등	=	61,650천원
61,650,000원		

3 사업설명

사업목적

- 물재생분야 관련 업체와 협업으로 청년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청년 구직층에게 필요한 맞춤형 상담 및 정보 제공으로 청년취업 준비자들이 실제 도움되는 행사 기회

사업근거

-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5개년 계획(물재생시설과-30044호, '22.12.22.)

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5. 1. ~ 2025.12.
- 대상 : 물산업분야 관련 재학·졸업생 및 관심 시민
- 행사주체 : 서울특별시
- 추진방법 : 물산업 전문분야별 맞춤형 일자리 탐색 기회 및 구직 제공
- 사업의 주요내용
 - 업체 전문분야별(건설사·엔지니어링·공공기관 등)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
 -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 구직층 만족도 제고
 - 현장체험을 통한 물산업 진흥 및 육성의 취지와 필요성 제고

추진경위

- '23.8. : 물산업분야 일자리 박람회 개최계획 수립
- '24.10. : 물산업분야 일자리 박람회 개최

2025년도 추진일정

(단위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100,000	
참가업체 섭외	2025 04~2025 05		건설사·엔지니어링·공공기관 등

서울 디자인산업 실태조사

1 기 본 현 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서울에 특화된 디자인산업 육성 정책 입안을 위해 서울 특화 디자인산업분야, 산업 트렌드 등 전반에 관한 실태 및 통계조사 추진		
사업비 (당해년도)	35,000천원 기타 (예산 외)	(국비) (구비)	(시비) 35,000천원 (기타)

□ 사업 담당자

실 · 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디자인정책관	디자인산업담당관	김연주 2133-9324	안신훈 2133-9325	권도형 2133-9329

*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

2 예 산 설 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천원, %)

구 분	2024예산액 (A)	2025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-) 20,000	(x-) 35,000	(x-) 15,000	(x-) 75
사무관리비	(x-) 20,000	(x-) 35,000	(x-) 15,000	(x-) 75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5년 예산내역	
사무관리비	○ 서울지역 디자인산업 실태조사	= 35,000천원

과목구분	2025년 예산내역	
	35,000,000원	
	- 연구원 인건비 20,000,000원	= 20,000천원
	- 디자인비, 인쇄비, 회의비 등 경비 15,000,000원	= 15,000천원

3 사업설명

사업목적

- 서울시 디자인산업 관련 통계 분석을 통한 현황 도출
- 최근 3년간 변화된 디자인산업의 현황 비교를 통한 면밀한 정책 개발
- 디자인산업 정책수립, 평가의 기초자료(서울 디자인 경쟁력 측정 등) 제공

사업근거

-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제2항

사업내용

- 사업대상 : 서울 디자인전문기업, 디자인활용업체
- 사업기간 : '25.1~12월
- 사업내용
 - 서울시 디자인산업 규모, 활용률, 디자인 전문업체 및 활용업체 수, 사업 실적, 정책 지원 분야,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등
 - '22년 ~ '24년 디자인산업 통계 실태 비교를 통한 업계 동향 변화 분석
 - 디자인전문회사의 사업장 현황 및 지역분포, 디자인역량 등 현황 분석

추진경위

-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추진

2025년도 추진일정

(단위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35,000	
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	2025 01~2025 12	35,000	자체 조사를 통한 서울시 디자인산업 통계 분석 추진